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13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이민석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길영,
김원태,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성연,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1명)

1. 제안이유

- 도시 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참여 기회 및 신청 대상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창의적인 건축문화 확산을 통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나.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지역과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하여 대상지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다. 사업 대상지 신청을 수시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창의적·혁신적 건축디자인이 시공 과정 중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협약 체결 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

-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중 준치관리구역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④ 시장은 사업 대상지를 수시로 접수하여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창의적·혁신적 건축 디자인이 시공 과정 중 일관되 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자와 협력하여 설계자의 건축과 정 참여, 협약 체결 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u></p>
<p>제5조(사업 대상지 선정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p> <p>1. (생 략)</p> <p>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 구역. <u>다만, 존치관리구역은 예외로 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③ <u>사업 대상지는 공모 등의 방 식을 적용하여 도시·건축디자 인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u></p>	<p>제5조(사업 대상지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단서 삭제></u></p> <p>3. <u>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 는 구역</u></p> <p>③ <u>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u></p> <p>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p>

현 행	개 정 안
<p>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협상대상지’는 위원회의 의결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u>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u></p> <p>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중 <u>존치관리구역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u></p> <p>④ 시장은 사업 대상지를 수시로 접수하여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사업참여 기회와 신청대상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사업방향 및 운영절차 개선 등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